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문제 1】 'A버거'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乙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50점)

제11조 [계약의 발효일과 계약기간] 이 계약은 2018년 3월 2일부터 발효되며 그 기간은 계약 발효일로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12조 [영업지역의 보호] 乙의 영업지역은 X지역으로 하며, 甲은 계약기간 중 乙의 영업지역에서 乙과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乙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재료의 조달] A버거의 주재료인 햄버거 패티의 공급원은 甲으로 한정한다.

2019년 4월 15일, 甲은 乙의 영업지역에 자기의 직영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乙의 동의를 요청하였지만 乙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甲은 乙이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乙에게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乙이 이에 대해 항의하였음에도, 甲은 2019년 5월 1일 이후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지 않았다.

물음 1) 2019년 7월 1일, 乙은 더 이상 甲과의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乙이 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0점)

물음 2) 甲이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한 乙은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乙은 甲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乙이 승소할 경우 甲이 乙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2】 커피사업을 시행하는 가맹본부 甲은 가맹점사업자 乙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매주 수요일에 乙의 점포로 커피원두 10㎏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甲은 수요일 약속된 시간에 커피원두를 가지고 乙의 점포를 방문하였으나, 乙이 부재중이어서 커피원두를 인도하지 못하였다. 이에 甲이 그 커피원두를 가지고 돌아오던 중, 甲의 경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하여 그 커피원두는 모두 소실되었다. 甲이 乙에 대하여 소실된 커피원두의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제 3】 'N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가진 가맹본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 乙이 그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甲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건과 행사시기 및 방법 그리고 갱신요구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